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3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김인제 의원(1명)

찬 성 자: 김 경,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지향, 남창진,  
서준오, 유정인, 이숙자,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장태용, 정준호,  
최민규, 한 신 의원(17  
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일정 지역 내 집적도가 높거나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진흥지구 신청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신청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자치구의 신청 없이도 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선정 절차 지연을 야기하는 산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정비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수정(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 나.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의 신청 없이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제3항 및 안 제12조제1항)
- 다. 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 라.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 규정(안 제12조제11항).
- 마.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위원장 및 간사의 역할, 공무원인 위원에 대한 대리참석 규정 신설(안 제14조제9항~제11항).
- 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0조의2 제4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있는”을 “있어 법에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고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있는”을 “있어 법에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고시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대상지는”을 “지정할 때에는”으로, “하나의 지역으로 하되, 이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과 면적, 권장업종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로 각각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

“다만, 지정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거나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중 “구청장은 시장에게”를 “시장은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를 “제4항에 따라 시

장이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대상지를 선정하고자”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삭제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에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1. 제12조제9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흥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진흥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지정대상지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 중 “제2항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다만”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진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으로, “생략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산업환경 및 지역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제7항 중 “제11조제6항에 따른”을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12조제10항에 따라”는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3호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당연직 위원 : 전략산업 또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제14조제3항 중 “위촉직”은 삭제하고,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는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과 의회 의원의”로 한다.

제1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진흥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⑪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0조의2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u>있는</u> 지구를 말한다.</p> <p>5. "특정개발진흥지구"란 법 제3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u>있는</u> 지구를 말한다.</p> <p>6. ~ 1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 ----- ----- <u>있어 법에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고시된</u> -----.</p> <p>5. ----- ----- ----- ----- ----- ----- ----- <u>있어 법에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고시된</u> -----.</p> <p>6. ~ 1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① ~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대상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하되, 이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과 면적, 권장업종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 3. (생략)</p> <p>④ 구청장은 시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진흥지구의 지정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⑥ 시장은 직접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정된 지정대상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 --할 때에는 -----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거나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대상을 선정하고자 ----- ----- 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04 347 802 488">⑦ 시장은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 data-bbox="167 521 339 562">&lt;신설&gt;</p>	<p data-bbox="869 347 1042 387">&lt;삭제&gt;</p> <p data-bbox="834 521 1473 992">제11조의2(진흥지구의 지정해제·변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에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p> <ol data-bbox="869 1003 1473 1339"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조제9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흥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관할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li> <li>그 밖에 시장이 진흥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li> </ol> <p data-bbox="869 1368 1473 1603">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지정대상지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 7. (생략)</p> <p>⑥ 제2항과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진흥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p> <p>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p>	<p>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 -----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⑥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진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 -----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⑩ 시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이 진흥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li> <li>2. 진흥계획의 수행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진흥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그 밖에 시장이 지구지정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li> </ol> <p>&lt;신설&gt;</p> <p>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⑦ 제11조제6항에 따른 진흥지구의 변경으로 진흥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제12조제10항에 따라 진흥지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다만, 진흥지구의 제외 또는 해제 결정 이전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p>	<p>&lt;삭제&gt;</p> <p>⑩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산업환경 및 지역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⑦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 진흥지구가 ----- 한다. 다만, -----.</p>

현행	개정안
<p>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 진흥지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 ~ 2. (생략)</p> <p>3. 당연직 위원 : <u>경제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u></p> <p>4. (생략)</p> <p>③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당연직 위원 : <u>전략산업 또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u></p> <p>4.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의 -----  ---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의회 의원의 -----  ---.</p> <p>⑨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⑩ <u>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진흥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u></p> <p>⑪ <u>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u></p>

현행	개정안
<p>제20조의2(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의 설치·운영) ① 산학연협력사업 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 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3. (생략)</p> <p>4. <u>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u></p> <p>5. ~ 6. (생략)</p>	<p>제20조의2(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5. ~ 6. (현행과 같음)</p>